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9. 2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9호

다. 제출일자 : 2022. 09. 20.

라. 회부일자 : 2022. 09. 23.

2.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납부 관람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명시(안 제6조)
- 나.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소재지 주소 오류 정비(안 제3조 별표1)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07. 28. ~ 2022. 08. 17.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누락된 관람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반환권 보장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성북 구립 최만린 미술관 소재지 주소 오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